

충청남도 민속자원의 실태 및 관리에 대한 제언

충청학연구부 오석민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문화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다. 게임,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등이 산업부문으로 자리잡았고, 지역적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전통문화자원에 대한 요구도 늘고 있다. 사실 전통문화자원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가공·포장할 수 있다면, 더욱 각광받는 문화상품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내에서 전통민속 관련 자원들은 주로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물론 이외에도 민속자료가 많다. 예를 들어, 고가(古家)만 해도 ‘사적’[아산맹씨 행단], ‘중요민속자료’[아산건재고택], 도 지정 ‘유형문화재’[이남규선생고택], 도 지정 ‘기념물’[정순왕후생가]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민속자원은 일반인에게 친숙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부모가 ‘자랑스럽게, 마치 전문가처럼’ 자녀에게 설명해줄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민속 이벤트 행사가 종종 개최되고, 민속박물관을 찾는 발길이 잦아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민속에는 다양한 자원들이 속한다는 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민속자료’가 소위 ‘명품’들에 비하여 예술적 가치가 떨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역사로서, 과거 민초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그 무엇에도 비할 바가 아니다. 교과서를 통하여 접하지 못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부모 세대의 향수 어린 이야기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처럼 민속자원은 잠재력이 큰 자원에 속한다. 그러나 전통민속자원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 1)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조사·정리 이전에 소멸되어 가고 있고,
- 2) 일부만이 정부 지원 또는 문화운동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 3) 그 과정 속에서 무분별한 각색과 가공, 심지어는 없었던 민속을 날조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풍습이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멸 과정에서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마저 충분치 않았음은 문제이다. ‘미신타파운동’과 동시에 추진되었던 민속경연대회 등의 정부 지원, 그리고 학생을 중심으로 한 소위 ‘문화패’의 문화운동으로 전통민속은 커다란 부침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분야별 편향성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각자 특정 종목을 고집하였고, 나아가서 이데올로기적인 윤색을 가하면서, 때로는 하나의 선전도구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오로지 전통의 고수를 고집하여, 소위 ‘원형 상실’을 우려하는 견해 또한 다를 바가 없다. 역사적 현상은 끊임없이 변하며, 오히려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원형 고수의 결과 시대적 추세에 떨어지면서 전통문화를 외면하게 만들기도 한다.

1. 문화재 관리정책의 동향

현재까지도 문화재 분야는 국가 정책의 향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며, 향후 상당 기간 그러한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특히 2000년 전후 문화산업의 부각과 함께, 크게 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정부의 기본방향에도 ‘문화재 보급선양과 신문화 창조’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으로 전시시설의 개관 5건, 국제간 교류 실적, 문화재 소개책자의 발간, 안내판의 교체·정비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핵심 6대 과제 중 ‘효율적 활용’에서는 “문화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므로, 문화산업의 소재로서, 그리고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관광자원화 방안으로 유교문화, 가야문화, 백제문화 등을 고품격의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전통공예품을 응용한 관광상품화, 천연기념물의 문화상품화를 들고 있다. 또한 문화재 향유 기회의 확대 방안에서 무형문화재의 지역축제와의 연계, 자연문화재의 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유적 체험 프로그램, 전시·교육 시설의 확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적극적 활용의 측면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보존대책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전통민속마을의 정비방안에 집단상가 조성, 민속관 건립, 전통문화체험을 위한 홈 스테이(Home Stay)로의 활용을 적시하고 있으며, 또한 남산골 한옥마을의 관광호텔화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조사 연구활동에서도 주목할 부분이 많다. 2002~2011년간 민간신앙조사연구, 의식주조사 연구, 언어전승조사연구, 민속지도 제작 및 민속사전 편찬 등을 계획하고 있다.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도, ‘지역별 미발굴 무형문화재 기초조사 실시’, 그리고 그에 따른 ‘지정가치가 있는 종목 지정 추진’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사연구는 중앙 부처에서 전문기관에 발주될 것이다. 그러나 지역 차원에서 연구진으로 적극 참여하고, 나아가서 사전 또는 사후의 조사를 통하여 조사 연구를 보완·수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보다 충실한 기초조사의 바탕 위에 문화재 추가 지정, 나아가서 자원으로의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무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 입법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무형문화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아울러 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 주도의 음향영상매체를 통한 자료의 디지털화의 주된 대상이라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전통문화의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 후보목록으로 등재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민속분야와 관련해서는 월성 양동마을, 강릉단오제, 옹기장, 처용무, 제주 칠며리당굿 등이 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의 경우, 아산 외암마을, 은산별신제 등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대상이 있음에도 후보로조차 거론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원의 발굴과 후속 연구, 그리고 교육·홍보에 등한하였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은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문화 해설가’의 양성과 같이 자치단체가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또한 한국전통문화학교가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충청남도 민속 관련 문화재 현황

문화재 지정주체는 중앙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이며, 지정 주체에 따라 국가 지정과 시·도 지정문화재로 나뉜다. 국가 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 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로, 도 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무형문화재로 분류된다. 그 외에 1984년 이전 비지정문화재였던 대상들을 망라한 문화재 자료가 있다.

현재 문화재자료를 포함 충청남도 내에 지정된 민속 관련 문화재는 총 119건이며, 국가 지정 35건, 도 지정 64건, 그리고 문화재자료가 20건이다. 그 가운데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로 지정된 사례는 74건으로 전체의 약 62%를 차지한다.

그 가운데 고가(古家)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74건 가운데 21건(28.4%), 전체 119건 가운데 37건(31.1%)] 그 비중은 국가 지정(37%)이 도 지정(23.4%)보다 높은 편이다. 고가의 뒤를 이어서 공예, '출토 일괄', 예능, 의례, 양조, 민속놀이, 생업 관련 등의 순서가 된다.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문화재 지정에 있어서의 시기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기 구분에 있어서는 1961년 문화재보호법 시행 이후 1971년 4월 새마을운동 시행까지 문화재의 개념을 도입하고 민속 관련 문화재를 지정하기 시작했던 시기를 제1기, 새마을 운동 이후 1982년 문화진흥법 개정까지 정부와 학계에서 민속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제2기, 1990년 문화부 신설까지 지방문예의 진흥에 주력했던 제3기, 1990년 문화부 신설 이후 전통문화를 문화자원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제4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 이에 따른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시기별·분야별 충청남도 민속 관련 문화재 지정 현황>

시기	국가 지정								도 지정								문화재자료								계							
	생 업	의 식 주	공 예	사 회	의 례	놀 이	예 능	마 을	기 타	계	생 업	의 식 주	공 예	사 회	의 례	놀 이	예 능	마 을	기 타	계	생 업	의 식 주	공 예	사 회	의 례	놀 이	예 능	마 을	기 타			
제1기('61~'70)	2		1	1	4	8																					8					
제2기('71~'81)		1			3	4	7	2		1		3	13													17						
제3기('82~'89)	11	2		1	3	17	2	9	2		2	1	2	18		8	1	4			2	15	50									
제4기('90~)	2				1	3	6	1	6	6	5	2	7	6	33	1	1	1	1		1	5	44									
계	15	3	1	1	1	13	35	3	22	10	7	3	8	11	64	9	2	1	5		3	20	119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1980년대에 문화재 지정이 급증한 사실이다. 특히 1982년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1982~1989년까지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50건으로, 전체의 42.0%를 점하며, 1992년까지는 61건(51.3%)에 달한다. 문화재 자료를 제외했을 때에도 총 100건 가운데 35건(35.0%)을 차지한다. 소위 '비지정문화재'를 1984년 5월 17일을 기하여 일괄 문화재자료로 등재했는데, 이 또한 전통문화에 대한 정부의

1)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정부의 문화정책의 추이에 따른 시기 구분의 필요가 있다. 우선 1961년 문화재 보호법의 시행이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이어 1971년 4월의 새마을운동, 1982년 문화진흥법 개정과 그 뒤를 이은 1983년 지방문예진흥 5개년 계획의 시행, 그리고 1990년 문화부의 신설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각 정책 시행에 따른 문화정책의 차이는 한국 문화예술진흥원의 보고서들을 참조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백서』(1985), 『문화예술』(1989년 1·2·11·12월호) 등. 정은주는 구체적인 시기 구분을 하지는 않았으나, 각 시기별 변화를 강릉단오제의 변화에 있어서 중요 변수로 보고 있다. 정은주, 1993, 「향토축제와 '전통'의 현대적 의미 : 강릉단오제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1980년대의 경우, 한편으로는 전통민족문화 개발과 창달을 기치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운동 등에서도 전통문화를 사회적 기호로 내건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민속자원들이 부각되었다.

둘째, 1980년대의 열기는 1990년대 중반 일시 주춤하였으나, 1996년 이후 다시 급증세를 이어간다. 1990~2002년 1월까지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총 44건(40.0%)인데, 1996년 이후 6년 동안 지정된 사례가 32건(전체의 26.9%)으로 절대 비중(72.7%)을 점한다. 1990년대 후반 전통문화를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열기가 고조되었는데, 2000년을 전후로 한 문화재 지정의 급증은 그러한 배경에서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1982~1989년의 문화재 지정에 있어서의 편향성이다. 특히 고가(古家)의 비중이 월등하여, 당시 전체 50건 가운데 26건(52.0%), 지정 문화재 고가 총 37건의 70.3%를 점한다. 그 이전에 지정된 경우가 5건, 제4기에는 6건(13.6%)에 불과하여 대조를 이룬다.

이는 한국건축사학계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은 것으로, 1979년경부터 하회와 양동 등 소위 ‘전통가옥밀집지역’에 조사·연구로부터 시작되어²⁾ 1984년 마을 전체를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는 결실을 맺게 된다. 자체의 평가에 따르면, “점 단위의 문화재에서 면 단위의 지정으로”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리고 소위 ‘민속마을’ 지정에 제동이 걸리자, 건축사학계에서는 1988년 ‘전통건조물보존지구’를 설정하는 타개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고가 이외에 특기할 만한 분야는 눈에 띠지 않는다.

넷째, 1990년대 이후는 문화재 지정의 다변화로 특징지울 수 있을 듯하다. 전 시기 고가에 치우쳤던 경향은 한층 감소하였고, 다방면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음악·공예·놀이·제의 등의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문화적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되며, 향후 그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도 지정문화재의 급증이다. 특히 2000년(9건)과 2001년(6건)의 지정건수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시행 이후 지방 정부로서의 위상 강화와 연관되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여섯째, 전체적으로 관심이 저조한 분야가 많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속 분야이다. 충청남도에서는 단 1건이 1998년 처음으로 지정되었다. 충청도 무속은 속칭 ‘독경쟁이’ 또는 ‘법사’로 분류되는 남자 무당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계룡산은 1920년 시천교가 자리잡은 이후, 한국 신흥종교의 요람이기도 했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충청남도 무속에 대한 무관심은 이해하기 힘들다. 다만 최근 충청도 ‘앉은 굿’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기회를 빌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도안 지역은 1984년 정부의 강제 철거 이후 과거 면모를 거의 상실하였으므로, 하루 빨리 과거 자료에 대한 기초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짐작된다.

3. 충청남도 민속 관련 문화재 관리 현황

한편 1980년 이전 소위 ‘근대화’의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전통 민속은 ‘미신’ 등의 명목으로 타파되었다. 그리고 그나마 보존되는 일부 의례나 놀이조차 관변학자들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또한 생활의 장에서 수행되었던 것이 아니라, 일상과는 먼 공연예술화의 길을 걸었

2 경상북도, 1979, 『良洞마을 調査報告書』; 경상북도, 1979, 『河回良洞마을 調査報告書』 등.

다.

한편 민속이 무대에 오르는 과정에서는 왜곡과 변형이 발생한다. 주민이 아닌 직업적 공연자가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변화라 할 것이다. 과거 주체였던 사람이 관객으로 변했다는 점보다 큰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구성요소의 변화이다. 은산별신제의 경우, 주민들과의 면접과 과거의 조사자료를 살펴보면, 별신당의 행화는 하나 뿐이었다.³⁾ 그러나 지금은 산신·장수·복신의 행화가 모셔져 있다. 별신제와 관련한 전설에 윤색이 가해진 결과이다.

전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거 어느 때인가 전염병이 돌았는데, 꿈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은 백제의 장수이며, 군졸들과 함께 싸움에 쳐서 여기에 묻혔다. 그 뼈를 거두어 묻어주면 병마를 없애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별신굿을 시작했고, 병마가 셋은 듯이 물리났다고 전한다.

그런데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복신장군과 토진대사의 요소가 끼어들었고, 토진대사는 도침대사의 와전이라는 견해가 추가되었다. 윤색에 이에 그치지 않는다. 복신장군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백제부흥운동과 연관되었다고 보고, 2002년에는 문화재연구소의 주관으로, 전쟁에서 패한 백제군 전령이 은산 옛 장터에 서있는 느티나무[별신제 하당] 앞에 좌정한 장수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백제의 옛 땅임을 부각하려는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은산장터의 별신제를 백제부흥운동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이다.

‘원형을 재발견한다’는 이름으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는 일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때로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해석할 만한 경우도 있다. 김지영은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남원 춘향제가 시기별로 변해가는 모습을 살핀 바가 있다.⁴⁾ 그에 따르면, 1931년 식민지화 과정에서 향리 출신의 소위 ‘유지’들이 권번 기생들과 함께 춘향사(春香祠)를 건립하면서 새로운 의례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당시 권번 기생들은 창기(娼妓)나 작부(酌婦)와는 다르다는 차별적 이미지를, 열녀 춘향을 통하여 부각시키려고 하였고, 각 지방 권번의 대표급 기생들이 제관을 맡았다. 일제강점기 말 권번이 해체되면서, 그 후신이라 할 수 있는 국악원에 의하여 명맥을 유지하였다. 1950년 남원군이 의례를 주관하면서, 점차 종합축제의 성격을 더해 갔으며, 1982년에는 남원시민의 날을 춘향제로 정하였고, 1985년에는 남원춘향제전위원회라는 임시기구가 제전을 담당하게 하였고, 1986년에는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1981년 시 승격 이후에는 관광을 특화산업으로 인식하면서 ‘춘향골’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 광한루 확장 정화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춘향묘 정화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강릉 단오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강릉 단오제에 대한 정은주의 연구⁵⁾에서는, 본래 유래는 물론 제일(祭日)조차 불명확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나마 일제강점기의 기록에 의하면 1909년 일본인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며, 다만 5월 1일에서 7일까지 읍내 장터 한 구

3 국립민속박물관, 1998, 『한국의 마을제당(충청남도 편)』. 이 조사는 1967년에 진행된 것인데, 장수를 그런 행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산신도가 걸려 있었다고 한다.

4 그 내용에 대하여는 2002년에 별도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오석민, 2002, 『충청남도 전통 민속자원의 실태 및 관리현황』. 그 가운데 춘향제의 논의는 김지영의 논문을 정리한 것이다. 김지영, 1998, 「남원 춘향제의 연구 : 의례조직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그 내용에 대하여는 2002년에 별도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오석민, 2002, 『충청남도 전통 민속자원의 실태 및 관리현황』. 그 가운데 강릉단오제의 논의는 정은주의 논문을 정리한 것이다. 정은주, 1993, 「향토축제와 ‘전통’의 현대적 의미 : 강릉 단오제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석에서 무당이 가무를 하는 정도로 명맥을 유지하였다고 한다. 1960년대 중반 민속학자를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전국민속경연대회 출품 작품으로 ‘관노가면극’이 선택되었고, 1965년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강릉성황신제 가면극’이라는 이름으로 출품된 것을 계기로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었다. 그 이후에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던 놀이는 1974년 향토축제를 범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축제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관노가면극 보존회가 결성되었으며, 강릉부사가 대관령신을 맞이하러 가는 행렬⁶⁾ 및 훅불(또는 등불) 행렬이 관객들의 볼거리로 채택되었다.

강릉 단오제의 경우는 이미 중단된 의례가 부활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사례는 충청남도에서도 확인된다. 연산 백중놀이는 1942년 이미 중단되었던 놀이를 1989년 한 향토학자가 복원한 것으로, 1990년 제3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종합우수상을 수상, 1991년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받았다.

고증과정에서 조선 성종 때 김국광(1415~1480)을 기리기 위하여 시작된 것이라 하며,⁷⁾ 2002년 재연 행사를 521주년이라 하는 것은 김국광이 타계한 이듬해를 시작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중날 그가 살았던 왕대리 인근 27개 동리 주민들이 그의 묘소를 참배한 후에 두계천변에 난장을 트고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데, 광산 김씨들이 현 연산면 일원으로 이주하면서 연산시장과 연산천변에서 행해졌다고 한다. 모든 비용은 광산 김씨 문중에서 부담했으며, 1895년 제작되어 1942년 마지막 백중놀이까지 사용되었던 용기(龍旗)도 종친회에서 보관하고 있다.

민속 행사가 먼 과거에 시작되었다고 포장하는 태도는 보편적으로 나타난다.⁸⁾ 연산 백중놀이의 경우, 고대적 전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나아가서 특정인의 사망 후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시작된 전통이라고 윤색하는 점이 특징이다. 신라의 명장 김유신을 운위하는 강릉 단오제, 그리고 백제가 망할 당시 패잔병을 위안하는 의례로 시작되었다는 은산별신제보다는 그 기원을 내려잡고 있다.

그러나 농사가 한가해지는 틈을 타서 장터를 배경으로, 난장을 트고 풍물을 치는 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선 후기 이전으로 옮겨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일반적인 고색창연하게 윤색한다는 ‘전통의 발명’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기원에 대한 논의 외에도 의문점은 적지 않다. 현재 재연을 할 때, 김국광이 살았다고 하는 왕대리에 전해지는 쌍룡기에게 3개의 청룡기가 기세배를 한다. 기싸움이나 기세배는 통상적으로 일터로 나가던 두 두레째가 마주 쳤을 때 행해지던 것으로, 선생 또는 좌상 두레는, 기싸움의 승패에 따라 정해지거나, 때로는 각 마을의 위세, 예를 들어 영향력이 큰 지주가 사는 마을을 우대하는 바에 따르는 것일 뿐, 고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일반의 청룡기와 등급을 달리하는 쌍룡기가 있다면, 마을 단위를 넘어서는 두레 조직이 항구적으로 결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왕대리를 ‘左相’ 마을이라 하는 것은 김국광이 좌상[左議政]을 지냈기 때문이라 한다. 용기가 1895년에 제작되었다는 고증, 그리고 좌의정을 역임하였다 하여 그의 마을을 좌상마을이라 부른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 아울러 효자에 대한 표창, 또는 불효자에 대한 징벌

6 이를 통하여 아전들의 제의였던 ‘강릉 단오제’가 수령이 직접 반드시 의례로 격상한 셈이 된다.
[필자 주]

7 이하의 내용은 1991년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지정 심의조서」 참조.

8 이에 대해서는 흉스보움의 역작을 참고할 수 있다. E. Hobsbawm, T. Ranger (eds.), 최석영 (역), 1995, 『전통의 날조와 창조』, 서경문화사.

은, 동계 또는 향약의 상별 조항을 혼동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불효자에 대한 징벌로서 주리를 트는 것도 ‘조리돌림’의 관행을 잘못 해석한 듯하다.

놀이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우선 연산 인근이 백중놀이보다 칠석놀이가 많이 행해졌던 곳이다. 또한 연산장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참여 인원이 과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연산장은 1938년 당시, 논산장이나 강경장의 $\frac{1}{10}$ 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였다.⁹⁾ 당시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연산 백중놀이의 인원과 규모는 과도한 감이 없지 않다.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는 자연스럽다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재 담당기관이라 하여 변화에 참여 못할 바는 없다. 더욱이 일부 문화재, 특히 의례와 놀이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정체성 확립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원형 보존과 함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무대공연으로 변질’되면서 ‘상품으로 전락하였다’고 비판받는 의례가, 오히려 주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연구¹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사실상 말 그대로의 ‘원형 보존’은 불가능한 것이며, 다만 그에 가깝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해당 주민과의 관련성, 특히 정체성 확립의 측면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 연후에야 소위 ‘전통’의 자발적인 전승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재 담당기관의 시도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 철저한 조사·연구를 진행한 경우는 찾기 힘들고, 기계적으로 전통 요소들을 첨가시킨다. 때로는 의례와 놀이가 결합되어 있는 민속 중에서, 의례 또는 놀이만을 분리하여 지정한다. 과거 현장에서 보고 들으면서 직접 참여하였던 주민들과의 면접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연을 위한 시나리오가 작성된다. 이런 과정 속에서, 민속행사들이 전국적으로 ‘표준화’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 결과는 구태의연함이요, 식상함이다. 지금은 기초조사의 철저함, 그리고 재연행사에서의 참신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경쟁력을 갖추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사회에서 ‘문화재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4. 충청남도 민속 관련 문화재 지원 현황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여러 종류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의 경우,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으로는, 년 1회 공개행사비용 지원금과 보존회 지원금이 있고, 개인에게는 기·예능보유자, 보유자 후보,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활동 경비 명목의 전승 지원금, 전수장학생에 대한 수강 경비 명목의 전수장학금과 특별장려금이 있다.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다. 충청남도의 경우, 각 시·군에서 비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공개행사비용 지원금과 보존회 지원금은 없다. 그리고 기·예능보유자와 보유자 후보에게는 도와 해당 시·군이 각각 50%씩 지원하고 있으며, 전수교육조교와 전수장학생에 대한 지원은 없다.

전승지원금은 원래 생산품 제작이나 공연 등으로는 생계조차 잊기 어려웠던 까닭에 생활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되던 것이다. 그리고 2000년 이후 문화재청 내부 방침으로 지원금을

9 문정창, 1941, 『朝鮮の市場』, 日本評論社. p.251.

10 정은주, 1993, 「향토축제와 ‘전통’의 현대적 의미 : 강릉단오제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일체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었으나, 관련자들의 반발로 존속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일정액 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세부항목을 고려하여 금액을 차별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 결과, 지원액은 평균 수준으로 감액되었고, 향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민속 관련 문화재의 경우에도 고가 보수 또는 전시관이나 전수회관 건립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있다. 1993~2001년간 연도별 보수사업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민속 관련 문화재 보수사업 현황>

년도	예산액			
	계	국비	도비	군비
1994	661,384 (4.4%)	359,450 (5.9%)	160,967 (3.5%)	140,967 (4.4%)
1995	1,213,999 (11.6%)	423,520 (10.0%)	395,242 (11.1%)	395,237 (14.6%)
1996	2,068,570 (15.3%)	569,000 (12.8%)	761,785 (17.1%)	737,785 (17.0%)
1997	3,737,964 (14.4%)	1,193,816 (10.4%)	1,272,074 (16.8%)	1,272,074 (18.6%)
1998	2,457,500 (10.4%)	1,136,570 (10.2%)	660,465 (10.0%)	660,465 (11.1%)
1999	2,197,258 (6.4%)	1,188,700 (6.3%)	604,281 (6.0%)	404,277 (7.9%)
2000	2,301,087 (9.6%)	1,227,523 (8.4%)	665,497 (12.4%)	408,067 (10.3%)
2001	1,794,000 (7.6%)	1,040,000 (8.0%)	377,000 (6.8%)	377,000 (7.5%)
계	16,431,762	7,138,579	4,897,311	4,395,872

% : 당해연도 총 사업비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

위의 표에서 보면, 1995~1998년 사이의 민속분야에 대한 비중이 높다. 이는 다른 분야의 사업비가 축소된 결과일 뿐, 민속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다. 다만 1997년의 경우, 금액이 확연하게 증가하였다. 전시관 또는 전수회관 3개소[박동진 판소리 전수회관, 저산팔읍 길쌈놀이 전수회관, 외암마을 민속관 등 총 사업비 1,720,000천원]이 동시에 건립된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민속 관련 문화재 보수사업은 대체로 전체 예산의 15%를 넘지 못한다. 관련 시설 또는 건축물의 보수에 관련 예산이 집중 배정되는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 문화재 정비 사업이란 이러한 하드웨어 중심의 정비를 뜻한다. 그러한 가운데 무형의 가치가 크고, 공연 등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민속 관련 자원의 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추세는 민속 관련 사업 가운데 건축물 보수가 전체 148건 가운데 95건(64.2%)을 차지하는 데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민속마을 정비 역시 가옥보수를 위주로 하는 사업으로, 이를 합하면 105건(70.9%)에 이르게 된다. 우선 연도별 보수사업에 투자된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연도별 민속 관련 문화재 보수사업 현황>

연도	가옥보수	전시관	민속마을 정비	기타	계
1994	7	1	1		9
1995	15	3	1	2	21
1996	12	5	2		19
1997	16	3	1	3	23
1998	12	3	1	4	20
1999	11	4	1	5	21
2000	15		2	6	23
2001	7	3	1	1	12
계	95	22	10	21	148

다만 전시관 또는 전수회관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는 주목할 만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들을 무조건 관련 유적지에 건립하는 것은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다고는 하나, 홍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외부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을 선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문화재 정책을 국가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관련 시설의 정비에만 주력하였으므로, 문화재 관련 프로그램은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한 가운데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문화재보호법상의 의무적인 공개행사를 치를 뿐이다.

이미 관련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¹¹⁾ 문화재 관련 기관은 오로지 지원금 지급과 그에 따른 의무적인 공개행사의 개최 또는 출품 여부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의적인 공연이나 제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능보유자들은 문화재 지정을 단순히 부수입을 얻는 기회로 여길 뿐이며, ‘본연의’ 전통문화의 전승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개행사에서 외부 기관 또는 연구자의 연출과 각본에 따라 수동적으로 ‘연기’를 하는 광경은 일상이 되어 버렸다.

5. 충청남도 민속 관련 문화재 관리 개선방안

1) 기초조사의 필요성

문화재를 지정함에 있어서, 전체 가운데 일부분만을 분리하여 지정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지적이 있었다.¹²⁾ 이점에서 충청남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문화재 지정과 관리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된다. 기존 조사에서의 오류는, 그대로 답습하여 정형으로 굳어지기 때문이다.

때로는 참여관찰을 위한 장기간의 현지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정 단위의 적정성, 조작 여부, 고증 내용과 절차, 지정 명칭의 적절성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기 위해서, 완전한 민속지 수준의 보고서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조사 기간의 확대, 다수 전문가의 참여 등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많은 비용을 수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관련 당사자의 간단한 신청서 제출에 따라, 1~2일에 불과한 간단한 조사와 심사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결코 큰 비용이라 할 수는 없다.

한편 철저한 기초 조사와 연구의 목적은 오류의 수정과 지정의 투명성에서 그치지 않는다. 조사·연구 과정 자체가 홍보의 일환이 된다. 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인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그 결과들을 정리하여 소개총서로 발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문화재 지정은 그 자체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그리고 관광자원화까지 연결되는 사안이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홍보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바, 신

11 김세건, 「전승교육과정의 재검토와 새로운 방안 모색」,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문화이론과 정책적 실천에 관한 연구』(전경수 외, 2002), 이필영, 2002, 「충남의 무형문화재 현황과 개선방안」, 『충청남도 문화재 관리정책의 현황과 과제』(충남발전연구원, 2002).

12 김세건, 「전승교육과정의 재검토와 새로운 방안 모색」,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문화이론과 정책적 실천에 관한 연구』(전경수 외, 2002), 이필영, 2002, 「충남의 무형문화재 현황과 개선방안」, 『충청남도 문화재 관리정책의 현황과 과제』(충남발전연구원, 2002).

청단계의 사전조사는 후속연구를 위한 디딤돌로서의 의미도 크다.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문화재에 대한 소개책자가 빈약하므로, 소개책자의 발간을겸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2) 새로운 자원 발굴의 필요성

기초조사의 필요성은 미지정 자원의 발굴에서 더욱 강조된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 또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큰 민속자원은 부지기수이다. 논산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조선조 역로(驛路)상에 위치하여 여러 마을 주민들의 참여하던 부적면 부인2리 지발 부인당제, 금강의 대표적인 포구였던 강경읍 옥녀봉의 벗고사, 천연기념물인 오골계를 사육하는 연산면 화악리 화골마을의 칠석놀이 등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서산시의 경우, 옛 평신진(平薪鎮)이 설치되었던 항금산(亢金山, 또는 황금산)에서 행해지는 대산읍 독곶1리 황금산 풍어제, 4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였다고 하는 운산면 장승제, 고려시대 화변소(禾邊所)로 추정되며 조선시대 주사창(舟師倉)이 있었던 부석면 창리 창말의 영신당(迎神堂) 등등은 모두 주목할 만한 민속자원들이다.

3) 문화재 지정대상의 다변화

1980년경까지도 전통민속의 많은 부분이 일상에 속하였다. 농업 기계화가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었고,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오일장을 출입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급변하였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일상’에 속했던 전통민속자원들이 점차 주변에서 보기 힘든 과거의 유산으로 바뀌고 있다. 소로 쟁기질하는 광경도 보기 힘들고, 오일장은 이미 관광자원으로 바뀌고 있다.

나아가 최근의 관광산업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테마관광과 체험관광이라는 흐름은 이제 추세로 자리잡았고, 그러한 가운데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관광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셈이다.

충청남도에서 2000년에 독살을 도 지정 민속자료로 지정한 것은 발전적 조치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통 생업 관련 민속자원은 다양하다. 전통 자염(煮鹽), 예덕상무사와 저산팔읍 상무사, 대장간 등 농·어·상업, 수렵 등과 관련된 다양한 자원과 관련 자료와 유물을 수집한다면, 최근 강조되는 전통문화의 효율적 활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 정원의 정비, 전통음식의 발굴 등 의식주 생활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1983년 각 시·도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수합하여 발간한 『전국민속주조사』에는 충청남도에서 조사된 민속주가 단 2사례[두견주와 소곡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반성의 여지가 크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집중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대상은 종가집이다. 건물 자체가 문화재적 가치를 갖는 경우가 많고, 가전(家傳)되는 술과 음식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부조묘(不祧廟), 가묘(家廟), 족보, 관혼상제례, 나아가서 경관이 뛰어난 묘역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옛 연산 고을의 경우, 예학(禮學)의 고장이었다는 사실 또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반 문화와 함께 관아의 풍속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 가운데 상당수는 관아, 특히 아전이 주도하던 풍속인 경우가 많다. 강릉 단오

제, 남원 춘향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충청남도에서는 홍성의 홍가신 사당과 관련된 의례가 그에 해당하는 자원이 될 수 있다.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발굴된 후 공연되는 경우에도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 은산 별신제의 경우, 저산팔읍 장시와의 연관성, 나아가서 미당장의 장승제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활용 가능성의 폭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속신앙은 보통 놀이와 함께 하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큰 항목으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 특히 과거 민속신앙의 보고였던 신도안 일원의 경우, 종합적인 조사를 제안하는 바이다. 신앙과 관련하여, 노거수를 문화재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도 있다. 보호수들이 대부분 목신제(木神祭)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상들은 발굴할 경우에도, 타 시·도에 앞서서 선점하여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조선시대 선비의 대명사였던 호서사립의 전통이 퇴색하여 버린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양화되는 문화적 수요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자원목록을 집대성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이다. 특히 전통민속 자원의 경우, 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급격하게 소멸되고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4)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활성화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3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전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그 가운데 문화재 위원과 전문위원, 그리고 관계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전수교육보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모두 전승의 단절을 우려한 지원 대책이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까지 ‘창조적 계승’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자가 선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비인기 분야의 경우, 전수 지원생의 부족으로 단절의 우려마저 크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거니와,¹³⁾ 현재 충청남도의 무형문화재 가운데 전수교육이 활발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현재 청년층의 참여가 저조하고, 다만 인근 노인들이 소일거리 삼아서 보존회를 지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수회관을 건립하고 관련 장비를 완비하며, 전수교육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감독을 강화하고, 전수교육에 대한 엄정한 평가하는 등의 조치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오히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에는 각 분야에 고유한 전승상의 애로사항, (관광) 상품화 가능성을 포함한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적합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유자와 보존회,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의 심층면접, 나아가서 공연행사에 대한 참여관찰 등의 조사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에서는 문화상품으로의 개발방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 관련 당사자에게 경제적 혜택과 사회적 명성이 돌아온다면 청년층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¹⁴⁾

13 김세건, 「전승교육과정의 재검토와 새로운 방안 모색」,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문화이론과 정책적 실천에 관한 연구』(전경수 외, 2002).

14 예능분야 가운데 소위 개인종목에 속하는 무용과 음악 등은 전수생과 이수자의 수는 매우 많

5) 활용방안의 다각화

문화재보호법은 ‘원형보존’을 기본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속에 있어서 원형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부터 해결하여야 한다. 과거의 유물만 전해지는 대부분의 문화재와는 달리, 민속은 특정인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속 연행 또는 제작되어 왔었고, 우연적인 시점에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뿐이다. 바꾸어 말하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스스로 계속 변하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여, 원형 보존을 이유로, 생활을 구속하고 자연스러운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민속의 원형보존’이란 단지 기록을 하는 선에서 그쳐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더욱이 원형보존 때문에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일상 생활 자체와 연관된 경우가 많고, 특히 민속마을과 같은 경우는 생활 자체가 문화재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새로운 편의를 누리지 못한 채로,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도록 강요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관련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으며, 문화재 관리에서도 일정한 타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에 대한 보상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문화재의 효율적 활용의 문제로 이어진다.

문화재 활용의 문제는 집단의 정체성, 관련 산업의 발전 또는 연관 효과 등과 연계된 사안이다. 특히 21세기의 주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관광산업의 중요한 자원이 되는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다.

문화재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민속 관련 문화재는 원형보존 문제와 배치될 가능성도 높다. 옛 모습을 고집한다면 청소년층의 흥미를 끌기 어려우며, 반대로 현대적 감각에 맞게 바꾼다면 ‘원형보존’이라는 ‘기본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문화재가 그렇기는 하지만 ‘원형보존’과 ‘효율적 활용’ 사이의 논란은 민속 관련 문화재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 현안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문화재 정책에서 점차 효율적 활용의 측면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한옥마을의 관광 호텔화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재 정책의 장기적 목표가 정부 지원금의 축소 내지는 폐지이므로, 자립기반의 조성은 존립 자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주변의 관련 관광자원과 연계 개발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은산 별신제와 한산 모시는 동일한 저산팔읍이라는 시장권에서 모시라는 특산품의 특화를 배경으로 장터의 민속이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순회 개최의 방안, 그리고 모시전의 특화 및 현대화 등의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른 성격의 자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명도가 높은 서산마애불을 찾는 관광객에게, 운산 지역의 장승제를 부활시켜 볼거리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체험하게 할 수도 있다. 홍가신 사당과 관련한 의례를 홍주읍성 개발과 연관시키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문화재청의 기본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역축제와의 연계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그

으며, 보유자의 지위도 여타 종목보다 높아서 대학교수의 경우에도 보유자가 되기 위해서 심사를 신청하는 실정이다. 강정원, 2002 「무형문화재 지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책」,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문화이론과 정책적 실천에 관한 연구』(전경수 외, 2002). 참고로 이는 익년도 필자가 기본과제의 주제로 삼은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러나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5월 또는 10월이라는 개최시기 등,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과는 다른 차별성을 갖추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축제의 개최시기를 휴가철 또는 명절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휴가철의 경우, 가족이 함께 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명절의 경우,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라는 특성을 살려 ‘만남의 장’ 등을 개발할 수 있다. 문중 모임, 학교 동창회 등과 연계시켜 귀향객과 고향 친지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산품 장터를 함께 개설하여 고향을 떠날 때 선물을 마련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다.

미발굴 자원의 경우,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은 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비지정 민속마을 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해안지역의 경우, 갯마을이라는 지명도를 이용하여 넓게 발달한 갯벌을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최근 민속마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촌을 선정한 사례가 없으므로, 어촌민속과 생태환경을 결합한 형태의 가칭 ‘생태민속어촌’의 체험공간을 조성할 수도 있다.

개별화되어 관광객을 유인하지 못하는 공예부문의 경우, 집단화를 통하여 활로를 모색할 수도 있다. 공예 기술은 보유자의 연고지를 고집할 필요가 적은 만큼, 관광지 또는 교통 요충지에 일정 공간을 선정하여 (가칭 ‘충청문화타운’), 전시·홍보·공연·제작·판매의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도 있다. 그러할 경우, 단절 가능성성이 큰 전승 분야에 대한 관심도 유인할 수도 있고, 정기적인 경연대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명소로서 부각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6) 지역 문화재 전담기구의 설립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2006년까지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또는 위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많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특히 지방교육청에 이양 또는 위임되어 있다. 문화재 정책에 관한 한 일본의 예를 따르는 경우가 많고, 또한 지방자치체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므로, 그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치단체로서는 중앙으로부터 위임되는 업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립 문화재 관련 연구소의 건립은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산발적으로 계획·시행되고 있는 문화재 관련 업무를 종합하고, 시행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사·연구에서부터 수집·정리 및 전시와 활용에 있어서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문화재 정책은 일개 부서에서 전담하기에는 너무 벽찬 규모이다. 더욱이 최근 충청남도에서 개발사업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한 조사, 그리고 그에 따르는 관련 유품에 대한 처리는 현안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